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2624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조세형,유태훈

피고(선정당사자)B

변론 종결2024. 10. 31.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 4. 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12,394,9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94,9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룬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2024.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형식적 내용만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실질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 되었을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이종광

별지